

조합업무 관련 ‘질의회신’ (2)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조합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회신’ 코너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8. 선급금공동관리 질의(공동관리 대상금액) [대전300-141 (2011. 3. 24)]

질 의 요 지

1. 동일공사에 보증채권자가 다수인 공동도급 건으로 보증채권자의 선급금 안분비율로 각각 보증서가 발급될 경우 공동관리 대상금액에 합산 적용하는지 여부
2. A등급, 공사금액 10억원, 선급금보증 1차분 3억원을 기존 발급했던 조합원이 2차분으로 2억원을 신청하여 공동관리 대상금액에 해당될 경우 (단, 1차분 미정산)
 - 선급금 수령비율은?
 - 공동관리 비율과 그 금액은?
3. 질의 2에서 1차분 발급이 공동관리제도 시행일 이전이고 2차분 발급이 시행일 이후일 경우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업무300-78 (2011. 3. 25)]

1. 질의 1의 경우 1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이 당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조합원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 각각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된 경우 공동관리 대상에 적용됩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선급금 수령비율은 기지급된 선급금 중 미정산 선급금액과 추가 보증에 해당되는 선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선급금 수령비율은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질의 3의 경우 선급금 수령비율 산정 시 공동관리제도 시행 전에 발급된 선급금보증에 대한 미정산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도시행 이후 추가 보증에 의하여 지급되는 선급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 수령비율을 산정하므로 귀 지점 질의의 경우는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선급금공동관리 조합원 건의사항 [대전300-40 (2011. 1. 28)]

질의요지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은 담보목적에 충족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업무 300-21 (2011. 1. 31)]

조합원의 선급금 수령 증가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선급금 중 일부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공동관리 제도 시행, 담보로 현금을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는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조합 보증수수료가 저렴한 점과 조합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보전하고 보증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외국인 대표자 약정체결 관련 질의 [광주300-548 (2007. 6. 29)]

질의요지

1. 약정인 대표자가 외국인으로서 조합에 보증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직접 서명할 경우 약정체결 여부
2.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한 한도거래채무약정서로의 약정체결 가능여부

회신내용

[업무 300-157 (2007. 7. 9)]

1. 한도거래용채무약정 연대보증인은 보증업무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규정하는 적격여부에 따라 국내 대표자의 약정체결 방법과 동일합니다.
2. 영문 한도거래용채무약정체결 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문에 의한 조합서식을 이용, 약정체결

11. 한도초과수탁금에 대한 질의 [감사080-27 (2007. 5. 31)]

질의요지

1. 보증한도가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그 현금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담보로 제공한 현금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회신내용

[업무300-136 (2007. 6. 12)]

1.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한 조합원이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로 현금을 수탁하여 보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업무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개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2. 담보로 제공된 현금을 반환 시에는 보증업무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당해 보증이 해제된 후에 담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2. 고압가스설비 안전검사용역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순천 300-130 (1999. 6. 16)]

질의요지

“고압가스설비 안전검사용역” 사업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업무312-220 (1999. 6. 28)]

“고압가스설비안전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행할 수 있는 용역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조합의 보증대상 사업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13. 약정서와 공사계약서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보증서 발급 질의 [총정로330-282 (2000. 8. 9)]

질의요지

1.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가 “갑”과 “을”이 있는 경우에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의 발급신청은 우리조합과 한도 거래용채무약정거래를 체결한 동사의 각자 대표자 중 “을”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계약보증서 상에 A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로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계약상대자인 각자 대표자 “갑” 또는 우리조합과 보증 등 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 상의 각자대표자인 “을” 중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우리지점 의견
A주식회사가 우리조합과의 보증등 업무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용채무약정체결은 각자대표 “갑”과 “을” 중 “을”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은 각자 대표인 “갑”과 “을” 중 “갑”으로 체결하고, 동공사 계약보증서 발급 신청은 우리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체결자인 “을”의 명의로신청한 경우에 있어 동사의 정관 상에 각자 대표자의 대표권제한사항으로 위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상의 상대방인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는 “갑”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계약보증서 상의 대표자를 “을”의 명의로 계약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업무300-193 (2000. 8. 23)]

위의 질의는 귀 지점 의견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14. 보증기간 경과 후 추가보증서 발급 질의 [대구300-429 (1999. 11. 16)]

질의요지

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주처로부터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원·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변경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증액분에 대한 추가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조합이 추가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발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신내용

[업무300-193 (2000. 8. 23)]

1. 계약보증은 조합원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공사는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므로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보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2.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행정처리 절차상 부득이하게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보증서 발급일 자체를 소급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15. 유지보수공사 및 단가계약의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인천200-343 (1999. 10. 22)]

질의요지

1. 발전설비(배관/제관)등의 유지보수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업무312-360 (1999. 10. 30)]

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당해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까지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공사내용(기존배관시설의 유지·보수작업, 배관의 신설 및 교체작업, 밸브류 신설 및 교체작업 등)은 건설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합니다.
2. “단가계약”이라 함은 공사량의 단위당 가격(단가)에 예정 총공사량을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총공사기간 내 일정기간 공사를 부분적으로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타 계약보증과 동일하게 조합이 보증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